



해양경찰청

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


한국선급



뷰로베리타스

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업무대행 협정서

이 협정은 해양경찰청(이하 “주관청” 이라 한다)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선급, 뷰로베리타스(이하 “대행기관” 이라 한다)간에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정은 주관청이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그 대행업무의 범위, 일반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련법규) 이 협정과 관련된 법률과 국제협약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 및 제112조
- ② MARPOL 부속서 I 제37규칙 및 부속서 II 제17규칙

제3조(대행업무의 범위) 주관청이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업무(이하 “대행 업무” 라 한다)의 범위는 첨부된 부속서에 따른다.

제4조(규정해석) 위탁받은 검인업무(이하 검인업무)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주관청의 해석에 따른다.

제5조(일반조건)

- ① 이 협정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행한 업무는 대한민국 법률 및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(이하 “관련규정” 이라 한다)에 적합한 경우 주관청이 수행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.
- ② 주관청은 대행기관이 검인한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검인 내용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- ③ 대행기관은 검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상계획서 검인을 신청한 자와 이해충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대행기관은 ISO 9001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⑤ 대행기관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 및 지부를 두어야 한다.

제6조(적용법률과 면제 등)

- ① 대행기관은 검인업무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,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국제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.
- ② 대행기관은 검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의 적용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보고 등)

- ① 대행기관은 부속서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을 명시된 기간 내에 주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규정된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주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대행기관은 검인업무와 관련하여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 등을 지적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정보제공)

- ① 주관청은 원활한 검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인관련 지침을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주관청과 대행기관은 검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.
- ③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자체의 규정 및 규칙 등을

주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검사원)

- ① 대행기관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(이하 '검사원'이라 한다)를 지정할 때에는 「선박안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대행기관은 검사원의 선임, 해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주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·훈련) 대행기관은 검인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제재) 주관청은 부적합 선박에 대한 검인 등 검인업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하자 등의 발생 시 그 원인이 대행기관의 검사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기관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행기관은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

- ① 주관청은 대행기관의 검인업무 전반에 대한 적절한 이행여부를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, 대행기관은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장소·정보의 제공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주관청은 제1항의 지도·감독 중 발견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행기관에 시정·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행기관은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감사) 주관청은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이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보안유지)

- ① 주관청과 대행기관은 본 협정에 따른 대행업무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대행기관에 소속된 직원,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정보도 주관청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책임 및 구상)

- ① 주관청은 대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행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주관청이 부담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대행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구상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수료)

- ① 대행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행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대행기관은 검인업무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주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7조(개정) 주관청과 대행기관은 서면에 의하여 이 협정의 본문과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내용은 서면동의를 한 날부터 적용된다.

제18조(발효 및 종료)

- ①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을 서명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- ② 대행기관은 협정 기간 종료 90일전 까지 5년의 범위 내에서 협정기간 연장을 주관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청이 승인한 경우 효력이 연장된다.

③ 제1항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종료한다.

1. 관련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대행기관이 이 협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주관청 또는 대행기관 중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정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

④ 이 협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대행기관은 30일 이내에 이 협정에 따라서 수행된 대행업무에 관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주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이상의 증거로서 협정서 4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하고 각 기관에 각 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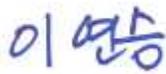
2019. 12. .

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

청장 조 현 배 이사장 이 연 승 회장 이 정 기 대표 매튜 드 튀니
(Mathieu DE TIGNY)



해양경찰청장을
대리하여,
해양오염방제국장
임택수



뷰로베리타스
대표를 대리하여,
한국지사 대표
크리스토프 까페탱
(Christophe Capitant)

부속서

대행업무의 범위 및 보고사항

1. 대행업무의 범위

- 가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1조 및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 비상계획서 검인
- 나. MARPOL 73/78 부속서 I 제37규칙 및 부속서 II 제17규칙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

2. 보고사항

- 가.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실적
- 나. 연간교육훈련계획 및 결과(제10조)
- 다. 조치사항 이행결과(제11조, 제12조)
- 라. 기타 대행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관청이 요청하는 사항

3. 보고시기

- 가. 검인실적 : 매 반기의 말일(다만,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)
- 나. 연간교육훈련계획 : 매년 1월, 결과 : 시행 후 30일 이내
- 다. 조치사항 이행결과 :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
- 라. 대행기관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: 즉시